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602

발의연월일: 2022. 1. 27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승원·김용민

민형배 · 오영환 · 유정주

윤영덕 · 최혜영 · 한준호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(在任)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.

그러나 「공직선거법」에는 국회의원의 중임 또는 연임 제한이 없 어 전·현직 국회의원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 게 되어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.

국회의원의 중임·연임 제한이 없어 정치신인이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여정치신인의 출마 제한과 세대교체 등을 통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임.

이에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,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

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(제49조제7항 신설등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 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

제52조제1항제4호 중 "第49條第6項의 規定에"를 "제49조제6항 또는 제7항을"로 한다.

제60조의2제8항 전단 중 "제49조제10항"을 "제49조제1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"제49조제12항"을 "제49조제1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구국회의원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지역구국회의원은 제49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⑥	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⑥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⑦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
	어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
	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
	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
	<u>할 수 없다.</u>
<u>⑦</u> ~ <u>⑩</u> (생 략)	<u>⑧</u> ~ <u>③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1
	2항까지와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①·⑤ (현행과 같음)
제52조(등록무효) ① 候補者登錄	제52조(등록무효) ①
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	
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	
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第49條第6項의 規定에</u> 위반	4. <u>제49조제6항 또는 제7항을</u>
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	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~	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 ① ~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	8

및 회보에 관하여는 <u>제49조제1</u> 0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선거 기간개시일 전 150일"은 "선거 기간개시일 전 150일(대통령선 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)"로 본다.

- ⑨ (생략)
-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(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.
- ① · ② (생 략)

	- <u>제49조제</u>
11항	
⑨ (현행과 같음)	
10	
<u>조제13항</u>	
①·② (현행과 같음)	